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스 마 트 제 조 혁 신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기관 및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추진기관 및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안 제5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

-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사업을 위해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10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도록 함.

2)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5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나.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안 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과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을 고려하여 기업의 수준을 확인하고,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안 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수집, 가공·분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안 제1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포상받은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24조, 제25조, 별표 3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등의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2. 28.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지원 업무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보급 지원사업

2.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

·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규모
4. 지원 자격·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는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기업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사업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보안 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2.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인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하였을 것
2.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 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심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전문기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야 한다.

③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2.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사실의 관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3]

참여제한 사유 및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참여 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 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서 제24조제3항에 해당되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년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년 이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년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년 이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년 이내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 제1항	

[별표 4]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환수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사업비 전액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사업비 전액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사업비 전액 이내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사업비 전액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6호 및 이 영 제24조제1항	사업비 전액

비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서 제25조제3항에 해당되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연 락 처	(044) 204 - 7271